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예방안전과
행정안전부	2019년 3월 29일(금) 조간 (3. 28. 12: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지만석 주무관 박문순
		연락처	044-205-4510 044-205-4517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 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미세먼지, 강풍(풍랑), 화재 중점 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미세먼지(황사)	강풍·풍랑	화 재

○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 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4월에 월평균보다 사고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높은 유형 ** 트윗 1억 2,173천 건

○ 아울러,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사고) 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차량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최근 5년('13~'17)간 사고발생 건수 연간 월평균 92,349건 4월 평균 93,029건

○ 사고 원인은 운전자 법규위반*(99%, '17년 기준)이 대부분이다.

* 직진 우회전 진행 방해(56%), 부당한 회전(11%), 안전거리 미확보(9%), 긴급차 피양 의무 위반(7%), 과속(5%), 기타(11%)

[최근 5년('13~'17년)간 전체 유형별 사고 건수] (단위 : 건) [출처: 재난연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2,860	73,683	89,494	**93,029**	98,599	91,532	95,481	95,238	95,634	100,925	99,049	92,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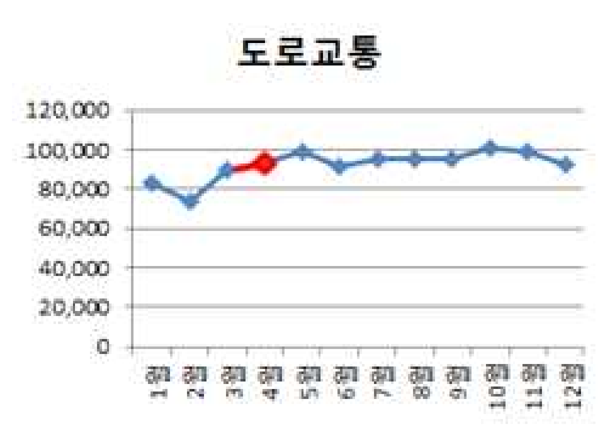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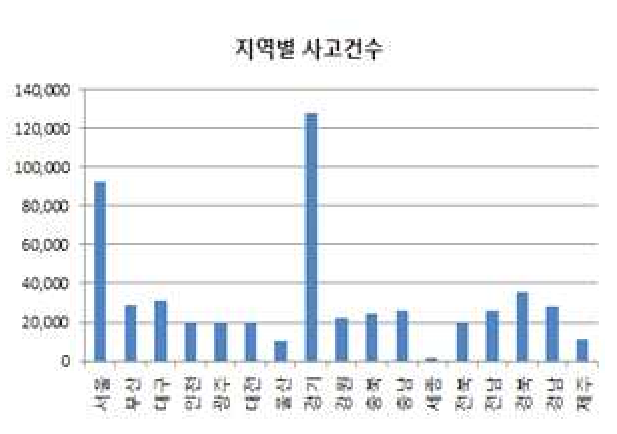

○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양보운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

○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 '화물차 집중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26.9%) →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 → 전체 교통 사망사고중 화물차 연관 건수(75.5%) (2018년 기준, 경찰청)

** 전체 인구(5,163만명) → 65세 이상 고령 인구(14.3%, 738만 명)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44.5%) (2018년 기준, 경찰청)

□ (자전거사고) 따뜻한 날씨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 최근 5년('13~'17)간 자전거사고 건수 연간 월평균 2,678건 4월 평균 2,838건

[최근 5년('13~'17년)간 전체 유형별 사고 건수] (단위 : 건) [출처: 재난연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6	1,026	2,090	**2,838**	3,829	4,024	3,348	3,531	3,720	3,453	2,108	1,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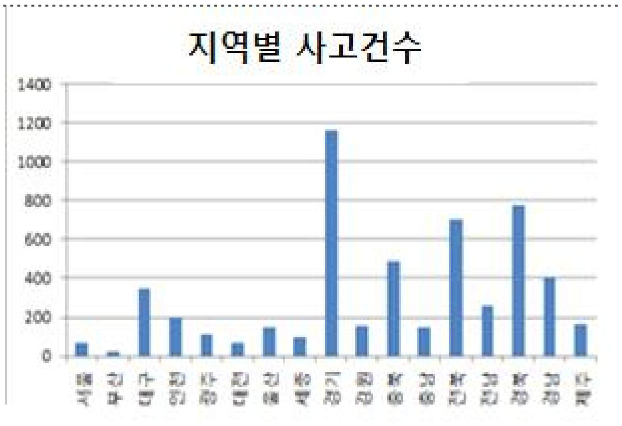

○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 하였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불량(0.7%), 기타(0.7%) 이다.

○ 자전거 이용 전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말기 등 안전수칙*의 숙지가 필요하다.

* 자전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하기, 자전거 승차 중에는 휴대전화 또는 DMB 시청하지 않기,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 등 켜기, 과속하지 않고, 20km이하로 안전속도 준수하기,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

□ (미세먼지·황사) 중국의 황사 유입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타 계절에 비해 국외 기여도가 높은 시기

**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PM : particulate matter)

○ '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 '17년 이후 황사 기상특보 발령현황*은 없으며 미세먼지 예보건수**는 예보기준 변경 등으로 '18년에 증가 하였다.

* (황사기상특보발령) '16년 : 7건 → '17년 : 0건 → '18년 : 0건
** (미세먼지예보건수) '16년 : 299건 → '17년 : 334건 → '18년 : 728건

※ '18년 선진국 수준 예보제 기준 강화(환경부)
- 2018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 2026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
- PM2.5 일평균 기준 : 과거 50 ㎍/㎥→ 2018년 35 ㎍/㎥(미국, 일본 수준)
→ 2026년 15 ㎍/㎥ (WHO 권고기준))

[연도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 현황] (단위 : 일수) [출처: 한국환경공단]

구분	횟수	일수
2015	413	133
2016	299	73
2017	334	72
2018	**728**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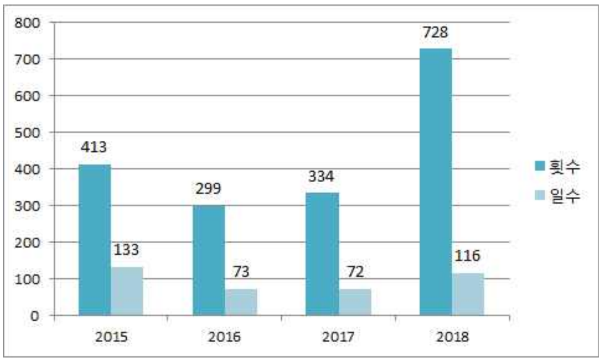

○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 미세먼지 관련법 의결(3.19)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 산업부 소관),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 강화 등, 환경부 소관), ③ 재난 및 안전관리 법(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행안부 소관)

○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나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강풍·풍랑) 지역적인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되고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년간('07 ~ '18) 총 956회의 강풍(풍랑)의 기상특보가 발령 되었으며 2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최근 12년('07~'18)간 풍랑 특보발령 건수 연간 월평균 455건 4월 평균 500건
강풍 특보발령 건수 연간 월평균 289건 4월 평균 456건

[최근 12년('07~'18년)간 기상특보현황] (단위 : 건) [출처: 기상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23	851	953	956	539	241	475	535	507	748	945	1,243
강풍	311	308	396	456	269	77	203	202	160	240	359	481
풍랑	612	543	557	500	270	164	272	333	347	508	586	762

[단위: 건수]

[단위: 백만 원]

< 2012. 4.2 ~ 4.4 피해사례 >

○ 피해지역 : 총 13개 시·도, 124개 시·군·구
○ 이 재 민 : 18세대 33명
○ **재산피해 : 21,250 백만 원**
○ 재해원인: 5.2m 높은 파랑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의 김·다시마 등 수산 중·양식 시설 피해와 27.3m/s의 순간 최대풍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시설 하우스의 피해 다수 발생

○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화재) 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양간지풍) 봄철에 양양과 간성사이 또는 강릉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
(높새바람) 봄부터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을 때 푄현상에 의해 영서 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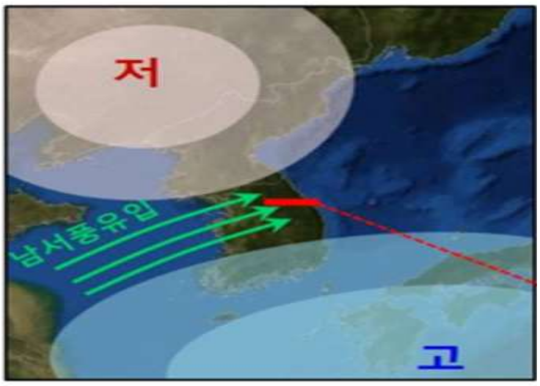

<기압계 모식도>

<양간지풍 모식도>

※ 최근 12년('07~'18)간 건조 기상특보 발령 건수 연간 월평균 126건 4월 평균 254건
최근 5년('13~'17)간 화재 건수 연간 월평균 17,924건 4월 평균 19,177건
최근 5년('13~'17)간 임야(들불, 산불)화재 건수 연간 월평균 208건 4월 평균 492건

[최근('07~'18) 건조 기상특보 현황] (단위 : 건수) [출처: 기상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70	216	290	254	127	9	0	0	0	24	110	212

○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특히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밖의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으로 나타났다.

* 부주의(60.5%), 전기적 요인(29.9%), 기계적 요인(11.6%), 화학적 요인(1.6%), 가스 누출(0.5%), 교통사고(1.2%), 기타(0.7%)

▷ 2005.4.5. 낙산사 화재(양간지풍) 사례 (4월 5일 오후 발생, 산림 970ha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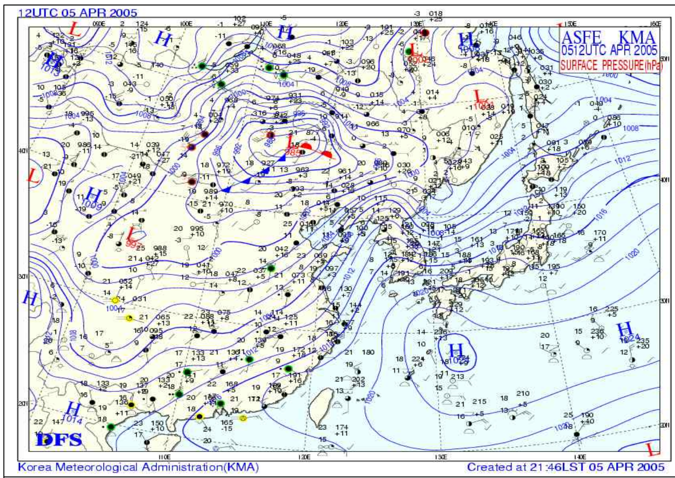

2005.4.5. 21시 **지상일기도**(낙산사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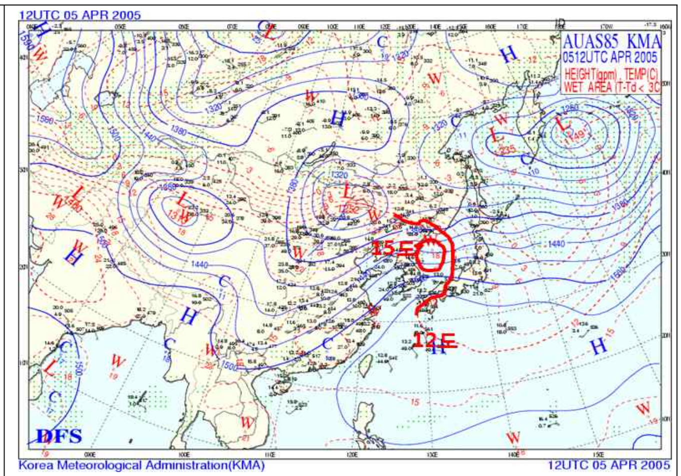

2005.4.5. 21시 **850hPa일기도**(고도 1.5km)

ㅇ 낙산사 주변 최대 순간풍속 발생 현황

- 4. 7. 23:30 미시령 43.4m/s(156km/h) - 4. 7. 20:30 설악산 38.0m/s(137km/h)
- 4. 5. 07:00 고성 29.3m/s(105km/h)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 3. 15 ~ 4. 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위험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운전자가 알아야 할 수칙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그리고 앉아 있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 운전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의 금지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을 때
  -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

- 운전자의 운전대 조작이 불안해 진다.
-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돌발 시 반응이 늦어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 음주운전(취소 상태수준)과 동일한 위험이 있다.
- 문자 송수신 시 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한다.

DMB 등의 영상시청 금지

운전 중 전화 받고 DMB 보기 '음주보다 위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것은 법정 음주운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치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주행차로 유지나 돌발상황에 따른 대처능력 등이 감소해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보험사의 교통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경남신문 2016.04.12

-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즉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해서는 안 된다.
- 영상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상표시장치를 볼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등이 정지했을 때	교통정보 안내를 시청할 때	후방카메라 영상을 볼 때

불필요한 소음 발생 금지

- 자동차 등을 급출발시키거나 급가속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가속하여 원동기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 해야 한다.
-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틴팅(일명 선팅) 기준 준수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눈으로 지각되는 파장 범위를 가진 빛) 투과율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가시광선투과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앞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옆면 창유리(좌우) :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

※ 가시광선 투과율을 위반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2만원)가 부과된다.
※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 · 다툼 등의 행위를 해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차에서 내리는 때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도로 종류에 따른 속도의 기준

일반도로

도 로	차 로	제한속도
일반도로	편도 2차로 미만	최고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고속도로

구 분	제한속도
편도 1차로	최저 50km/h, 최고 80km/h
편도 2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10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 최고 80km/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	최저 50km/h
	최고 12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 최고 90km/h

이상 기후 시에는 최고 속도의 20~50% 감속

- 최고속도의 20% 감속 운행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을 때,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때
- 최고속도의 50% 감속 운행 :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 과속운전이 위험한 이유

충돌 시 충격력이 커진다

주행 중 60km/h와 100km/h의 속도 차이는 40km/h에 지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각각 5층 건물과 13층 건물 높이에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만큼 차이가 있다.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주행 중에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을 해도 자동차는 바로 정지할 수 없다. 60km/h 때는 약 29m를, 100km/h인 때는 약 68m를 더 주행한 후에야 정지할 수 있다. (마찰계수 : 08, 공주시간 : 0.7~1초)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조사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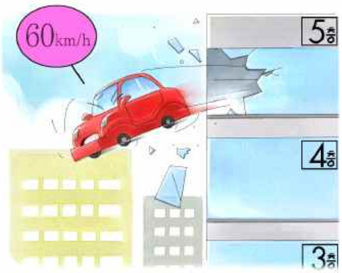

03

내 차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할까?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가능)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고속도로

※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가능

※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가능

※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04

버스전용차로 바르게 알기

:: 버스전용차로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청색단선이나 청색복선으로 설치하며, 실선과 점선으로 진 · 출입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 청색차선의 종류

청색실선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된다.
청색점선	통행 허용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통행 불가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차로로 진·출입하거나 전용차로 최초의 시작점에서 전용차로 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넘어갈 수 있다.
청색단선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청색복선	야간 일부를 제외한 전일 운영 구간

::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운송 목적의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기간 이내에 한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2018. 2. 14. 시행

구 분		내 용
시행 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07:00 ~ 21:00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07: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통행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 구체적인 운영구간 및 시간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를 참조

05

도로에서는 사람이 우선

우리나라는 교통선진국에 비해 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많다. 이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도 역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하였다. 특히 보행자 안전구역인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하는 공간이지만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이며, 법으로도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 교차로 주변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한다.
-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안전한 횡단을 돕는다.

참고 2 자전거안전수칙 [출처: 도로교통공단]

두 바퀴로 가는 교통안전

∷ 자전거와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

우리나라의 도로 통행방법을 정해놓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를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마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 중에 자전거와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차이므로 차마의 통행방법을 지켜야 한다.

| 차의 종류 |

∷ 자전거 안전을 위한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 보도가 분리된 경우 차도만으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노인 그 밖의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나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옆의 표지로 허가된 장소 외에, 자전거는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 된다.

∷ 자전거 승차전 점검사항

자전거 점검 A B C

- **Air** : 눌렀을 때 엄지손가락이 안들어갈 정도의 공기압
- **Brake** : 정상작동 여부와 브레이크 선이 단단히 고정되었나
- **Chain** : 기름칠이 잘되어 있나, 느슨하게 늘어져 있지 않나

∷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할 때...

- 교통안전표지와 신호 등의 모든 통행규칙을 준수하고,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 자전거의 브레이크 장치와 타이어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때 이상이 있다면, 운전을 금지한다.
-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신호하여 다른 대상에게 방향전환을 예고한다.
- 수신호를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양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고 기기조작을 금지한다.
- 야간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화장치 등을 설치하고 운전한다.

∷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의 종류 :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자전거도로의 종류와 표지는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의 통행방법

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도주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주행을 할 수 있다.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하며, 차도에 가까운 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 천만시대

자전거 교통사고 어느 정도나 될까?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정도를 점유율로 확인하면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건수와 부상자는 최근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전체교통사고 대비 자전거 교통사고 점유율

자전거 교통사고 주요 원인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또는 DMB 시청, 음주운전 또는 과속운전, 이어폰을 끼고 음악청취, 안전모 미착용, 야간운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미부착, 역주행, 제동장치가 없거나 정비되지 않은 자전거 사용, 불법주정차, 전방주시 태만 등의 원인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안전수칙

- 자전거 음주운전 하지 않기
-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기
- 자전거승차 중에는 휴대전화 또는 DMB 시청하지 않기
- 야간에 자전거 운행 시에는 전조등 및 후미등 켜기
- 과속하지 않고, 20㎞이하로 안전속도 준수하기
-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장을 위해 자전거횡단도 이용하기

자전거횡단도

참고 3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출처: 환경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1단계 고농도 발생

1.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2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1.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2. 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
3. 차량 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
4.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준비하기

3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

1.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
2.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문화·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 2부제(인천, 경기 자율참여)
   ※ 문의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3. 서울시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무료(1~9호선, 시내·마을버스 등)
   ※ 인천, 경기에서 서울 진입시 서울 요금만 면제

4단계 주의보 발령

<영유아·학생·어르신>

1. 실외수업(활동) 시간 단축 또는 금지
2. 이용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일반국민>

1.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5단계 경보 발령

<영유아·학생·어르신>

1.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업 권고
2. 질환자 파악 및 특별 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일반국민>

1.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자제하기

6단계 주의보 · 경보 해제

1. 외출 후 깨끗이 씻기
2.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3.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하기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 발 · 눈 ·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 · 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 · 교체)

참고 4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 크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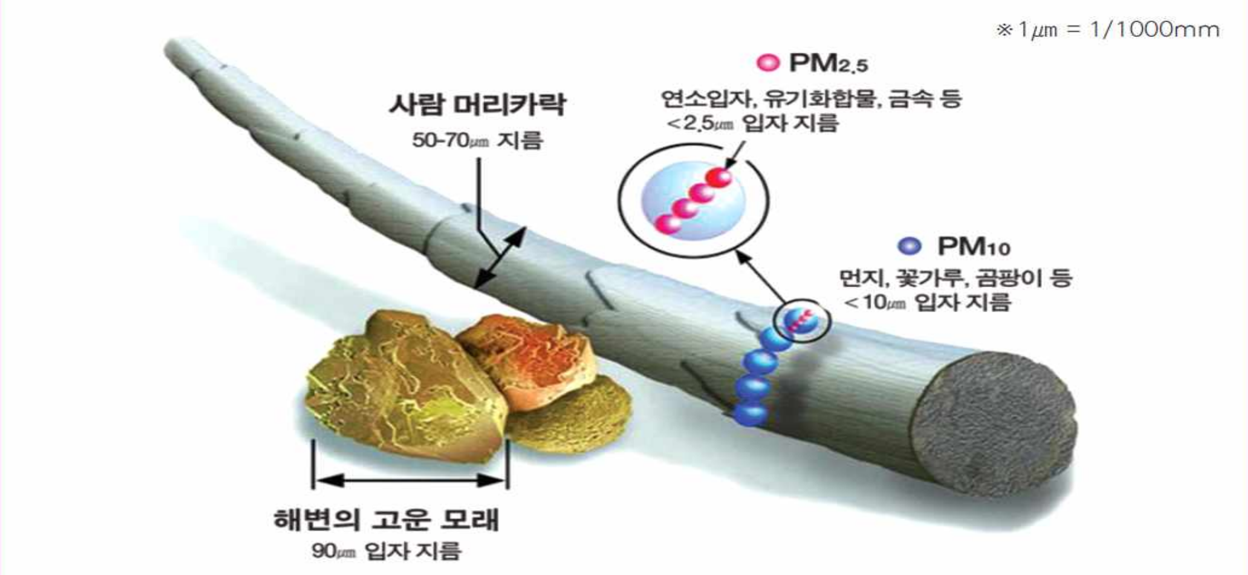

＊출처 : 미국 환경보호청(EPA)

구 분	황 사	미세먼지
정의	-중국, 몽골의 사막지대 등에서 불어 오는 흙먼지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경우 통상 1~10㎛ 수준	-직경이 10㎛이하인 먼지로서 10㎛이하인 PM_{10}과 2.5㎛이하인 $PM_{2.5}$로 구분
성분	-주로 토양성분	-일부 광물성분도 있으나 주로 탄소 또는 이온성분
영향	-부정적 영향 : 농작물 등의 생육방해, 반도체 공장 등 조업방해 등 -긍정적 영향 : 토양의 산성화 예방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 증가 ※ 긍정적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
예보제	-옅은, 짙은, 매우 짙은 황사 등 3가지 황사강도 적용 -황사특보(주의보, 경보) 등 실시	-PM_{10}, $PM_{2.5}$에 대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가지 예보단계 적용 중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중

＊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

참고 5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및 주의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

○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으로 광고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 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 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약외품이 아닙니다.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참고 6 강풍·풍랑 국민행동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강풍 국민행동요령 >

·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합니다.**

< 행동요령 >

-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습니다.
-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습니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정의)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함

(강풍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 발령

(강풍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 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 발령

< 풍랑 국민행동요령 >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맙시다.
- 항해 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합시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합시다.
-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합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풍랑 주의보) 해상풍속 14m/s 이상(3시간 이상 지속), 유의 파고 3m 초과

(풍랑 경보) 해상풍속 21m/s 이상(3시간 이상 지속), 유의 파고 5m 초과

참고 6 화재예방 국민행동요령 [출처: 소방청]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화재대비

■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과 대피훈련을 해야 합니다.

① 사전점검

눈으로는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 확인
-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 확인

귀로는
- 평소에 나지 않던 이상한 소리 확인

코로는
- 타는 냄새 확인

손으로는
- 만져보거나 두들겨 보거나

행동으로는
-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 난방기구 등 전열기구 사용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② 대피훈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신속히 움직인다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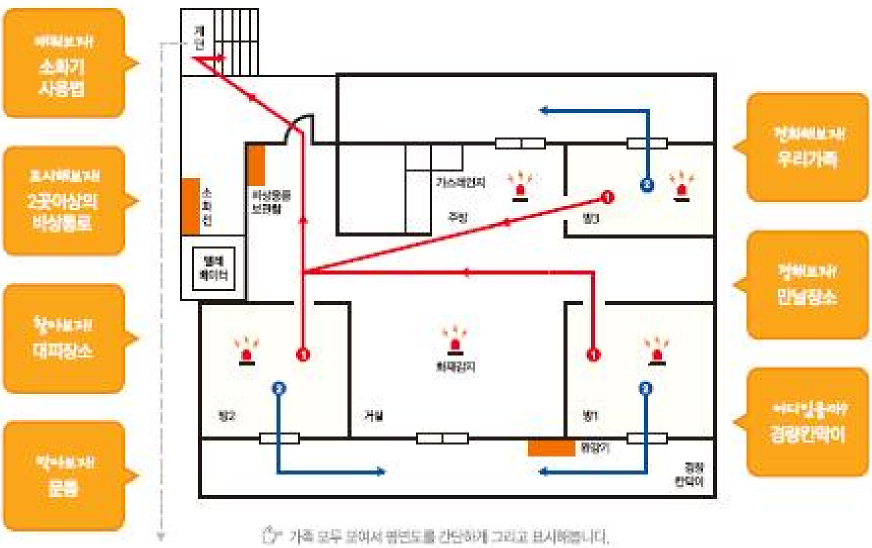

가족 모두 모여서 평면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표시해봅니다.

챙겨야할 내용 Tip

-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 사전약속
- 대피할 때 가져가야할 중요물건 목록작성과 챙길 사람 선정
-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연락해야 할 대상 선정
- 문틈을 막아야할 경우 청테이프 또는 수건
-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대피에 사용할 물건
- 긴급 대피한 경우 만날 장소와 비상연락망

옥상출입문은 항상 열려있는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참고 7 4월 중점사고 주요 통계 현황

1 기상특보 현황 (기상청 제공)

○ 최근('07-'18년)간 월별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회)

구분	계	비중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975	100	1,748	**2,225**	1,710	1,636	**1,414**	975	822	3,029	**2,996**	1,239	1,011	1,325	**2,593**
비중				10.6%	8.2%	7.8%	**6.7%**	4.6%	3.9%	14.4%	14.3%	5.9%	4.8%	6.3%	12.4%
순위				4	5	6	**7**	11	12	1	2	9	10	8	3
풍랑	5,454	26.0	455	**612**	**543**	**557**	**500**	270	164	272	333	347	**508**	**586**	**762**
호우	5,403	25.8	450	9	35	84	**176**	236	483	**1,872**	**1,724**	**579**	121	63	21
강풍	3,462	16.5	289	**311**	**308**	**396**	**456**	269	77	203	202	160	**240**	**359**	**481**
대설	2,371	11.3	198	**718**	**456**	**220**	**14**	0	0	0	0	0	0	133	**830**
건조	1,512	7.2	126	**270**	**216**	**290**	**254**	127	9	0	0	0	24	110	**212**
폭염	1,199	5.7	100	0	0	0	**0**	19	71	**584**	**512**	13	0	0	0
한파	782	3.7	65	**305**	**122**	28	**0**	0	0	0	0	0	10	56	**261**
태풍	551	2.6	46	0	0	0	**0**	0	14	**97**	**197**	**138**	**105**	0	0
황사	203	1.0	17	0	**30**	**61**	**14**	54	0	0	0	0	0	**18**	**26**
폭풍해일	38	0.2	3	0	0	0	**0**	0	4	1	**28**	2	**3**	0	0

○ 최근('07-'18년)간 년도별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회)

구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1,012	1,328	1,264	1,582	2,070	1,865	1,883	1,686	1,713	1,489	1,769	2,049	2,314
풍랑	5,454	352	315	412	485	426	518	444	447	459	496	552	548
호우	5,403	428	331	416	601	662	458	447	365	264	358	476	597
강풍	3,462	331	249	337	325	221	284	239	272	235	280	345	344
대설	2,371	82	131	125	282	208	242	222	289	143	199	197	251
건조	1,512	41	75	153	85	118	101	122	155	189	139	176	158
폭염	1,236	0	121	54	108	65	84	69	62	101	173	203	159
한파	782	0	12	42	53	86	111	80	82	29	81	87	119
태풍	551	54	3	0	84	32	85	26	40	50	34	13	130
황사	203	35	27	40	43	35	0	0	0	16	7	0	0
폭풍·해일	38	5	0	3	4	12	0	0	1	3	2	0	8

2 도로교통사고통계 (출처: 재난연감)

○ 최근 5년('13~'17년)간 전체 유형별 사고 건수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2,860	73,683	89,494	93,029	98,599	91,532	95,481	95,238	95,634	100,92 5	99,049	92,669

○ 2017년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고건수	비율(%)	사망자(명)	비율(%)	부상자(명)	비율(%)
운전자법규위반(99%)	계	216,335	100	4,185	100	322,829	100
	소계	216,322	99.99	4,184	99.98	322,801	99.99
	직진우회전진행방해	121,322	56.08	2,891	69.08	172,300	53.37
	부당한회전	24,358	11.26	317	7.57	40,092	12.42
	안전거리미확보	20,053	9.27	76	1.82	34,541	10.7
	긴급차피양의무위반	14,229	6.58	66	1.58	22,764	7.05
	과 속	10,184	4.71	338	8.08	17,272	5.35
	일시정지위반	7,516	3.47	158	3.78	7,897	2.45
	난폭운전	6,607	3.05	41	0.98	11,060	3.43
	기 타	4,803	2.22	42	1	5,559	1.72
	안전운전불이행	3,913	1.81	10	0.24	6,139	1.9
	앞지르기 방법위반	1,462	0.68	23	0.55	2,008	0.62
	중앙선침범	839	0.39	206	4.92	1,563	0.48
	진로양보불이행	491	0.23	2	0.05	807	0.25
	우선권 양보 불이행	375	0.17	10	0.24	560	0.17
	차선위반(진로변경)	111	0.05	3	0.07	143	0.04
	교차로운행방법위반	42	0.02	0	0	68	0.02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0	0	0	16	0
	철길건널목통과방법	3	0	1	0.02	3	0
	과 로	2	0	0	0	4	0
	신호위반	2	0	0	0	5	0
	보행자보호의무위반	0	0	0	0	0	0
정비불량(1%)		13	0.01	1	0.02	28	0.01

○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건수 및 인명피해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고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백만원)
계	216,335	327,014	4,185	322,829	-
서울	38,517	53,877	335	53,542	-
부산	11,966	16,752	173	16,579	-
대구	12,870	18,472	136	18,336	-
인천	8,107	12,073	116	11,957	-
광주	7,459	11,924	117	11,807	-
대전	7,703	11,738	81	11,657	-
울산	4,222	6,102	63	6,039	-
경기	50,195	77,527	776	76,751	-
강원	8,341	13,891	237	13,654	-
충북	9,317	15,432	227	15,205	-
충남	10,069	15,697	374	15,323	-
세종	746	1,125	18	1,107	-
전북	7,789	12,475	312	12,163	-
전남	9,833	16,176	393	15,783	-
경북	13,990	21,351	436	20,915	-
경남	11,579	16,845	329	16,516	-
제주	4,378	6,682	80	6,602	-

○ 월별,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 건수(사망)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4185	353	280	295	293	366	315	357	353	419	420	379	355
서울	335	32	25	29	20	27	29	29	24	31	31	28	30
부산	173	16	14	12	12	8	10	10	12	23	24	19	13
대구	136	8	5	6	9	16	11	12	10	16	15	11	17
인천	116	10	9	13	4	7	7	8	17	10	14	10	7
광주	117	10	10	10	15	11	9	5	5	11	13	10	8
대전	81	5	5	7	2	11	7	4	5	7	12	5	11
울산	63	6	6	3	6	5	4	5	2	9	3	4	10
경기	776	73	55	48	62	56	58	83	63	85	64	65	64
강원	237	26	5	13	14	27	16	28	26	25	24	18	15
충북	227	14	17	16	14	25	19	20	17	24	20	27	14
충남	374	30	31	28	22	38	31	31	35	27	41	27	33
세종	18	2	2	1	-	1	1	1	3	1	2	2	2
전북	312	22	20	21	24	23	16	30	24	42	31	26	33
전남	393	30	19	26	31	39	22	25	44	33	49	43	32
경북	436	32	21	36	29	43	44	32	33	45	39	47	35
경남	329	28	27	24	25	25	24	28	29	25	34	34	26
제주	80	11	11	3	4	5	8	7	7	6	6	5	7

○ 월별,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 건수(부상자)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22,829	26,099	22,323	25,046	26,530	27,268	26,454	27,362	28,162	29,371	28,698	28,472	27,044
서울	53,542	4,649	3,864	4,220	4,354	4,514	4,408	4,542	4,545	4,734	4,639	4,584	4,489
부산	16,579	1,329	1,193	1,414	1,342	1,442	1,393	1,460	1,510	1,470	1,381	1,313	1,332
대구	18,336	1,332	1,395	1,482	1,423	1,468	1,551	1,520	1,587	1,629	1,668	1,647	1,634
인천	11,957	1,083	908	978	976	978	965	1,109	955	1,030	964	959	1,052
광주	11,807	970	908	1,080	918	938	905	936	941	1,114	1,053	1,014	1,030
대전	11,657	945	850	883	924	995	938	1,016	1,026	990	1,011	1,002	1,077
울산	6,039	485	465	466	545	491	438	548	485	516	477	547	576
경기	76,751	6,397	5,085	5,658	6,224	6,267	6,275	6,289	6,701	7,161	6,870	7,160	6,664
강원	13,654	1,245	866	985	1,083	1,214	1,103	1,225	1,384	1,173	1,192	1,147	1,037
충북	15,205	1,023	961	1,150	1,195	1,318	1,277	1,293	1,387	1,497	1,418	1,461	1,225
충남	15,323	1,129	1,008	1,089	1,251	1,341	1,277	1,337	1,305	1,538	1,442	1,308	1,298
전북	12,163	891	876	882	1,073	1,065	1,027	1,037	1,094	1,152	1,145	1,002	919
전남	15,783	1,271	939	1,131	1,441	1,514	1,297	1,216	1,334	1,389	1,533	1,423	1,295
경북	20,915	1,521	1,449	1,698	1,803	1,834	1,703	1,818	1,832	1,883	1,882	1,871	1,621
경남	16,516	1,292	1,051	1,473	1,422	1,434	1,326	1,394	1,481	1,435	1,493	1,445	1,270
제주	6,602	537	505	457	556	455	571	622	595	660	530	589	525

3 자전거사고통계 (출처: 재난연감)

○ 최근 5년('13~'17년)간 전체 유형별 사고 건수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6	1,026	2,090	**2 838**	3,829	4,024	3,348	3,531	3,720	3,453	2,108	1,167

○ 2017년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충돌/추돌	기타
합계	5,330	3,239	710	38	1,304	39
서울	68	-	32	-	20	16
부산	25	13	7	1	4	-
대구	351	132	31	2	186	-
인천	194	117	47	2	28	-
광주	111	47	61	-	-	3
대전	71	67	-	2	2	-
울산	150	116	11	17	6	-
세종	94	94	-	-	-	-
경기	1,160	747	214	2	189	8
강원	155	70	27	1	54	3
충북	489	281	17	4	187	-
충남	146	79	52	2	13	-
전북	704	428	131	-	145	-
전남	259	133	10	-	113	3
경북	778	471	56	3	248	-
경남	408	288	14	-	105	1
제주	167	156	-	2	4	5

○ 장소별 자전거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주거용 건물	다중 이용	공사장	초고층 및복합	도로	유원지	하천, 호수	바다	산	교량	철로	공장	기타
합계	5,330	292	84	-	1	4,528	79	31	6	38	20	1	1	249
서울	68	-	-	-	-	54	-	5	-	1	-	-	-	8
부산	25	3	-	-	-	13	9	-	-	-	-	-	-	-
대구	351	18	10	-	1	245	4	4	-	3	-	-	-	66
인천	194	13	6	-	-	173	1	1	-	-	-	-	-	-
광주	111	7	-	-	-	97	1	-	-	-	-	-	-	6
대전	71	5	3	-	-	61	-	-	-	2	-	-	-	-
울산	150	-	4	-	-	113	4	1	-	12	15	-	1	-
세종	94	11	5	-	-	42	-	-	-	2	-	-	-	34
경기	1,160	44	14	-	-	1,033	4	3	-	2	-	-	-	60
강원	155	16	2	-	-	117	6	12	-	-	-	-	-	2
충북	489	47	1	-	-	392	9	-	-	4	-	-	-	36
충남	146	9	-	-	-	110	9	2	-	-	-	1	-	15
전북	704	44	7	-	-	622	23	-	2	3	2	-	-	1
전남	259	20	2	-	-	220	8	-	-	3	-	-	-	6
경북	778	46	20	-	-	702	1	1	-	4	3	-	-	1
경남	408	1	-	-	-	393	-	2	-	2	-	-	-	10
제주	167	8	10	-	-	141	-	-	4	-	-	-	-	4

○ 월별, 지역별 자전거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5,330	158	205	369	466	624	654	482	567	688	545	378	194
서울	68	2	4	3	5	4	9	2	9	18	6	4	2
부산	25	1	1	2	2	2	3	3	3	4	2	-	2
대구	351	20	18	34	29	38	39	34	23	39	37	29	11
인천	194	2	4	11	14	23	23	23	28	29	22	12	3
광주	111	6	5	6	11	17	10	11	9	10	11	7	8
대전	71	1	1	4	13	5	7	5	10	11	3	8	3
울산	150	10	10	9	4	14	15	19	20	12	11	23	3
세종	94	3	2	5	10	11	13	10	10	14	5	10	1
경기	1,160	28	50	69	105	134	155	106	128	140	135	75	35
강원	155	1	5	4	18	20	29	20	25	20	13	-	-
충북	489	19	22	26	51	60	49	35	55	58	54	38	22
충남	146	6	7	10	11	19	19	12	11	29	14	5	3
전북	704	14	23	57	65	92	76	61	62	103	82	42	27
전남	259	11	8	22	17	26	33	32	23	36	23	16	12
경북	778	15	15	55	74	86	97	64	90	100	76	74	32
경남	408	11	24	49	36	45	51	28	41	40	34	25	24
제주	167	8	6	3	1	28	26	17	20	25	17	10	6

○ 월별, 지역별 자전거 사고 건수(부상자) (단위 : 건)

구분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계	사망	부상	
합계	5,330	5,324	26	5,298	-
서울	68	76	-	76	-
부산	25	20	-	20	-
대구	351	350	-	350	-
인천	194	193	-	193	-
광주	111	111	-	111	-
대전	71	71	-	71	-
울산	150	150	7	143	-
세종	94	94	-	94	-
경기	1,160	1,153	3	1,150	-
강원	155	154	-	154	-
충북	489	489	2	487	-
충남	146	146	1	145	-
전북	704	707	3	704	-
전남	259	259	2	257	-
경북	778	774	5	769	-
경남	408	410	3	407	-
제주	167	167	-	167	-

④ 미세먼지(황사) 통계 (황사: 기상청, 미세먼지: 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PM 10)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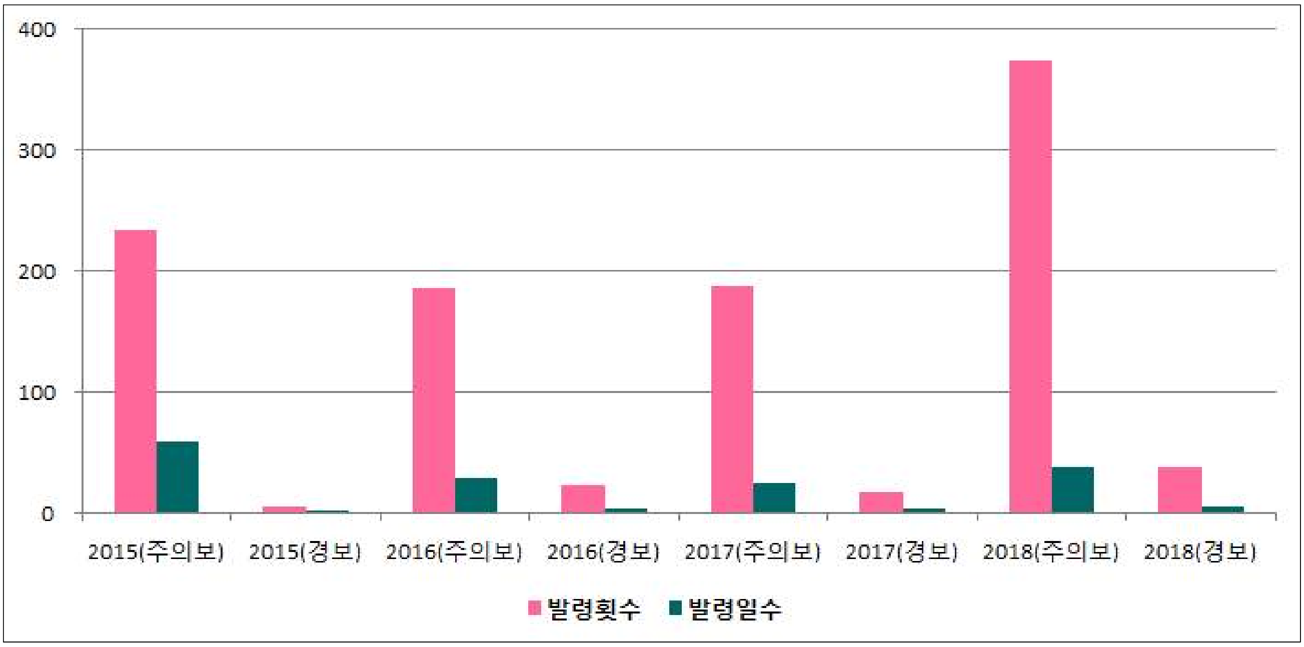

년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주의보)	일수	59일	5	11	8	21	7	11	12	-	29	25	26	5	13	4	11	3	9
	횟수	234회	3	16	6	32	3	12	7	-	48	33	29	2	6	5	24	3	5
2015 (경보)	일수	3일	-	-	-	-	-	-	-	-	-	3	-	1	-	-	-	-	-
	횟수	6회	-	-	-	-	-	-	-	-	-	4	-	2	-	-	-	-	-
2016 (주의보)	일수	29일	7	11	4	5	7	9	6	1	11	13	11	6	10	7	10	4	6
	횟수	186회	6	17	4	16	5	7	3	1	25	26	13	4	6	8	38	2	5
2016 (경보)	일수	4일	-	-	1	4	1	-	-	-	2	2	1	1	-	1	3	-	-
	횟수	23회	-	-	1	5	1	-	-	-	2	5	1	1	-	1	6	-	-
2017 (주의보)	일수	25일	10	5	4	14	8	3	2	6	22	18	0	8	9	4	5	4	4
	횟수	188회	6	12	3	25	5	9	2	6	40	23	11	6	4	7	23	3	3
2017 (경보)	일수	4일	-	-	-	1	-	3	-	1	1	1	-	1	-	2	2	-	-
	횟수	17회	-	-	-	4	-	2	-	1	4	2	-	1	-	1	2	-	-
2018 (주의보)	일수	39일	5	6	4	7	5	7	5	8	16	17	9	11	25	0	7	9	8
	횟수	374회	5	18	5	24	6	2	4	7	26	2	16	11	88	11	12	91	6
2018 (경보)	일수	6일	1	2	1	3	2	1	-	-	3	3	1	-	2	1	2	2	1
	횟수	38회	1	1	1	2	2	2	-	-	4	2	1	-	4	1	2	14	1

○ 미세먼지(PM 2.5)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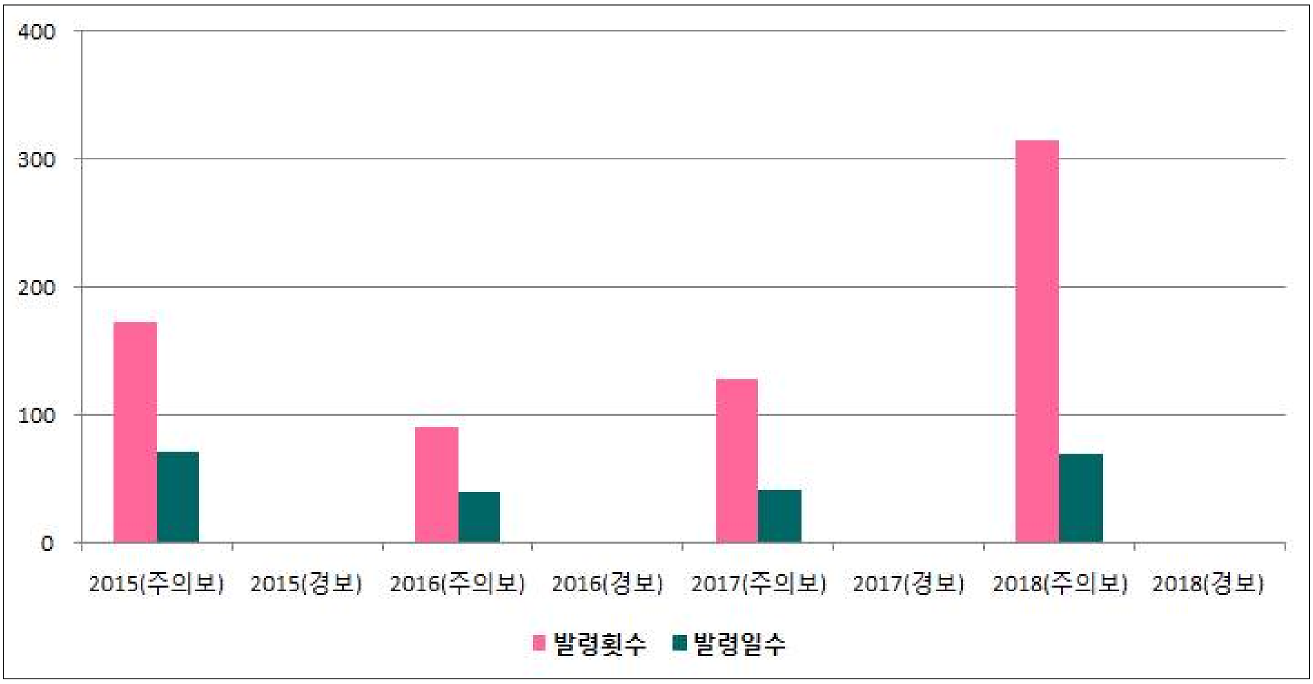

년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주의보)	일수	71일	8	23	4	16	20	8	14	-	10	39	12	1	10	6	8	15	10
	횟수	173회	6	28	4	26	10	6	8	-	12	28	11	1	7	5	7	8	6
2015 (경보)	일수	0일	-	-	-	-	-	-	-	-	-	-	-	-	-	-	-	-	-
	횟수	0회	-	-	-	-	-	-	-	-	-	-	-	-	-	-	-	-	-
2016 (주의보)	일수	40일	-	10	-	3	2	1	-	-	10	14	13	6	3	1	22	-	7
	횟수	90회	-	14	-	4	2	1	-	-	10	13	15	6	3	2	15	-	5
2016 (경보)	일수	0일	-	-	-	-	-	-	-	-	-	-	-	-	-	-	-	-	-
	횟수	0회	-	-	-	-	-	-		-	-	-	-	-	-	-	-	-	-
2017 (주의보)	일수	42일	10	6	4	17	12	2	2	5	23	21	11	2	10	-	18	-	3
	횟수	128회	5	4	2	19	7	2	2	3	30	17	10	1	6	-	18	-	2
2017 (경보)	일수	1일	-	-	-	-	-	-	-	-	-	1	-	-	-	-	-	-	-
	횟수	1회	-	-	-	-	-	-	-	-	-	1	-	-	-	-	-	-	-
2018 (주의보)	일수	70일	18	11	6	22	15	10	6	5	33	23	28	22	59	12	12	6	4
	횟수	315회	8	10	3	23	7	8	3	3	43	22	26	10	125	5	0	7	2
2018 (경보)	일수	1일	-	-	-	-	-	-	-	-	-	-	1	-	-	-	-	-	-
	횟수	1회	-	-	-	-	-	-	-	-	-	-	1	-	-	-	-	-	-

○ **황사일수** (황사: 기상청) **(단위 : 일수)**

연도	연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	6.4	0.2	0.1	1.8	2.5	1.1	0	0	0	0	0	0.2	0.4
최근 10년	6.5	0.3	0.4	1.9	0.8	1.6	0	0	0	0	0.1	0.8	0.6
최근 5년	6.6	0.4	0.6	1.6	1.3	1.9	0	0	0	0	0	0.8	0.1
최근 3년	5.5	0.2	0	0.2	2	2	0	0	0	0	0	1.2	0
2016	5.5	0	0	0.6	3.3	1.5	0	0	0	0	0	0.2	0
2017	6.2	0.5	0	0	0.6	4	0	0	0	0	0	1.1	0
2018	4.8	0	0	0	2.1	0.4	0	0	0	0	0	2.3	0
1973	3.5	0	0	0.4	0	2.5	0	0	0	0	0	0.6	0
1974	0.2	0	0	0.2	0.1	0	0	0	0	0	0	0	0
1975	2.3	0	0	0	2.3	0	0	0	0	0	0	0	0
1976	7.4	0	0	1.2	3.5	1.9	0	0	0	0	0	0	0.8
1977	6.5	0	3	3.2	0.2	0.1	0	0	0	0	0	0	0
1978	0.9	0	0	0	0.5	0.5	0	0	0	0	0	0	0
1979	3.9	0	0	0.2	3.7	0	0	0	0	0	0	0	0
1980	3.8	0	0	0	1.6	2.2	0	0	0	0	0	0	0
1981	7.8	0	0.1	0.7	0.8	6.3	0	0	0	0	0	0	0
1982	4.9	0	0	0	0.1	4.4	0	0	0	0	0	0	0.5
1983	1.5	0	0	0	1.2	0.3	0	0	0	0	0	0	0
1984	3.9	0	0.1	1.9	1	0.9	0	0	0	0	0	0	0
1985	1.8	0	0	1.8	0	0	0	0	0	0	0	0	0
1986	0.1	0	0	0.1	0	0	0	0	0	0	0	0	0
1987	0.2	0	0	0.2	0	0	0	0	0	0	0	0	0
1988	7.5	0	0	0	7.4	0.2	0	0	0	0	0	0	0
1989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0	4.2	0	0	0.2	4	0	0	0	0	0	0	0	0
1991	5.6	0	0	0	0	5.1	0	0	0	0	0	0.2	0.3
1992	3.1	0	0	0	3	0.1	0	0	0	0	0	0	0
1993	12.8	0	0	0	9.3	3.5	0	0	0	0	0	0	0
1994	0.9	0	0	0	0.9	0	0	0	0	0	0	0	0
1995	7.3	0	0	0.7	6.2	0.5	0	0	0	0	0	0	0
1996	2.2	0	0	0.2	0.2	1.7	0	0	0	0	0	0	0
1997	1	0	0	1	0	0	0	0	0	0	0	0	0
1998	11.1	0	0	2.9	8.2	0	0	0	0	0	0	0	0
1999	4.5	3.9	0.5	0	0.2	0	0	0	0	0	0	0	0
2000	9.8	0	0	5.3	4.5	0	0	0	0	0	0	0	0
2001	23.1	1.2	0	9.9	7.1	3.5	0	0	0	0	0	0	1.3
2002	14	1	0	6.3	4.7	0	0	0	0	0	0	2	0
2003	1.9	0	0	0.9	1	0	0	0	0	0	0	0	0
2004	6.8	0	1.5	3.8	1	0.5	0	0	0	0	0	0	0
2005	7.5	0	0	0.8	4.8	0	0	0	0	0	0	1.9	0
2006	10.4	0	0	3.8	5.9	0.7	0	0	0	0	0	0	0
2007	9.8	0	0.3	3.1	2.1	2.8	0	0	0	0	0	0.1	1.5
2008	7.2	0	0.8	2.4	0.5	1.8	0	0	0	0	0	0	1.7
2009	7.9	0	1	2.2	0.2	0	0	0	0	0.5	1.1	0	2.9
2010	12.4	0.6	0	4.6	0.8	0.9	0	0	0	0	0	2.5	2.9
2011	8.2	0	0	2.4	0.2	5.7	0	0	0	0	0	0	0
2012	1.7	0	0	0.3	0	0	0	0	0	0	0	1.4	0
2013	2.1	0.4	0	1.7	0	0	0	0	0	0	0	0	0
2014	7.7	1.6	0.2	1.7	0	3.5	0	0	0	0	0	0.4	0.3
2015	9	0.2	2.6	5.5	0.5	0	0	0	0	0	0.2	0	0
2016	5.5	0	0	0.6	3.3	1.5	0	0	0	0	0	0.2	0
2017	6.2	0.5	0	0	0.6	4	0	0	0	0	0	1.1	0
2018	4.8	0	0	0	2.1	0.4	0	0	0	0	0	2.3	0

5 강풍·풍랑 통계 (출처: 재해연보)

○ 최근 10년간('08 ~ '17년) 강풍(풍랑)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0,665	880	11,907	5,924	26,027	31	-	4,305	6,967	-	5,425	10,491	8,708
강풍·풍랑	40,710	880	11,663	5,819	2,470	-	-	-	6,967	-	2,883	1,624	8,404
강풍	39,955	-	244	105	23,557	31	-	4,305	-	-	2,542	8,867	304

6 화재통계 (출처 : 재난연감)

○ 최근 5년('13~'17년)간 월별 화재 발생 현황 (단위 : 건)

발생건수(건)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215,093	20,557	19,910	26,251	19,177	19,465
2017년	44,178	4,012	3,779	5,385	3,964	4,229
2016년	43,413	4,621	4,689	4,883	3,704	3,653
2015년	44,435	3,678	3,792	6,549	3,544	4,206
2014년	42,135	4,256	3,827	4,629	4,172	3,968
2013년	40,932	3,990	3,823	4,805	3,793	3,409

발생건수(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6,177	14,352	15,111	14,408	15,327	15,890	18,468
2017년	3,819	2,884	2,730	2,860	2,808	3,622	4,086
2016년	3,021	2,925	3,601	2,813	2,760	3,168	3,575
2015년	3,677	2,876	3,104	3,352	3,484	2,773	3,400
2014년	2,891	2,885	2,532	2,662	3,242	3,113	3,958
2013년	2,769	2,782	3,144	2,721	3,033	3,214	3,449

○ 최근 5년('13~'17년)간 원인별 화재 발생현황 - 재난연감】

발생건수(건)	합 계	전기적	기계적	가스누출	화학적	교통사고
합 계	215,093	45,612	23,438	843	2,687	2,460
2017년	44,178	9,263	4,489	175	625	457
2016년	43,413	8,962	5,187	177	625	486
2015년	44,435	8,962	5,187	177	625	486
2014년	42,135	8,980	4,511	146	452	520
2013년	40,932	9,445	4,064	168	360	511

발생건수(건)	부주의	기타	자연적	방화	방화의심	미상
합 계	113,700	2,345	1,158	2,134	3,426	19,771
2017년	23,428	282	250	383	515	4,311
2016년	22,629	175	191	403	584	3,994
2015년	22,629	175	191	403	584	3,994
2014년	23,525	847	283	467	795	3,909
2013년	21,489	866	243	478	948	3,563

○ 최근 5년('13~'17년)간 원인별 월별 화재 현황

구 분	합 계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	교통사고
합계	215,093	46,753	22,310	2,384	847	2541
01월	20,557	4,748	2,396	171	86	222
02월	19,910	4,085	1,882	136	79	232
03월	26,251	3,986	1,956	177	74	212
04월	19,177	3,518	1,694	197	60	201
05월	19,465	3,610	1,718	230	67	213
06월	16,177	3,437	1,557	232	46	187
07월	14,352	4,823	1,708	225	55	162
08월	15,111	4,399	1,800	233	59	218
09월	14,408	3,105	1,539	199	59	207
10월	15,327	3,221	1,848	207	67	228
11월	15,890	3,520	1,913	202	86	215
12월	18,468	4,301	2,299	175	109	244

구 분	부주의	기타	자연적	방화	방화의심	미상
합계	110,082	3,012	1,364	2,228	3,913	19,659
01월	10,081	318	39	190	397	1,909
02월	10,852	330	26	177	363	1,748
03월	16,744	375	43	219	461	2,004
04월	10,940	260	83	194	362	1,668
05월	10,930	244	82	219	362	1,790
06월	8,442	169	171	172	324	1,440
07월	5,231	164	291	166	247	1,280
08월	5,935	181	394	162	233	1,497
09월	7,131	188	96	216	281	1,387
10월	7,461	237	58	198	328	1,474
11월	7,665	230	50	144	280	1,585
12월	8,670	316	31	171	275	1,877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